

의안 번호	19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	---------------------------------------

1. 의안 제출

- 제 출 일 : 2022. 3. 8.(화)
- 제 출 자 : 중구청장
- 상임위 예비심사 : 2022. 3. 16.(수) ~ 3. 23.(수)
- 예결위원회 회부 : 2022. 3. 23.(수)
- 예결위원회 심사 : 2022. 3. 24.(목)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4. 예산안 규모

가.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제1회추경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67,289,002	100.00	419,974,461	47,314,541	11.27
일 반 회 계	458,104,531	98.03	412,170,377	45,934,154	11.14
특 별 회 계	9,184,471	1.97	7,804,084	1,380,387	17.69
의료급여기금	363,396	0.08	363,396	0	0.00
주 차 장	8,821,075	1.89	7,440,688	1,380,387	18.55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 419,974,461천원 대비 11.27%인 47,314,541천원이 증액된 467,289,002천원임.

- ▶ 일반회계는 11.14% 증액된 458,104,531천원이며,
- ▶ 특별회계는 17.69% 증액된 9,184,471천원임.

나. 세입예산(일반 + 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제1회 추경안)	구성비	기정액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67,289,002	100.00	419,974,461	47,314,541	11.27
지방세수입	53,189,883	11.38	53,189,883	0	0.00
세 외 수 입	22,835,111	4.89	22,751,286	83,825	0.37
지방교부세	20,268,552	4.34	16,214,000	4,054,552	25.01
조정교부금등	75,866,960	16.24	69,470,685	6,396,275	9.21
보 조 금	278,909,968	59.69	247,731,262	31,178,706	12.59
국고보조금 등	182,301,784	39.01	173,775,374	8,526,410	4.91
시·도비보조금 등	96,608,184	20.67	73,955,888	22,652,296	30.6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6,218,528	3.47	10,617,345	5,601,183	52.76
보전수입 등	13,600,361	2.91	8,124,460	5,475,901	67.40
내부거래	2,618,167	0.56	2,492,885	125,282	5.03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467,289,002천원으로 당초예산 세입 419,974,461천원보다 47,314,54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7% 세입이 증액편성 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전입금을 포함하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가율이 52.76%로 나타났음.

- ▶ 순세계잉여금 : 8,500,000천원 -----세입총괄예산(안) 12페이지
- ▶ 보조금 집행잔액 : 5,034,208천원 -----세입총괄예산(안) 12페이지
- ▶ 전입금 : 1,616,854천원 -----세입총괄예산(안) 12페이지

다. 세출예산(일반 + 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분 (기능별)	예산액 (제1회 추경안)	구성비	기정액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67,289,002	100.00	419,974,461	47,314,541	11.27
일반공공행정	20,704,294	4.43	19,443,606	1,260,688	6.48
공공질서 및 안전	6,692,015	1.43	3,754,364	2,937,651	78.25
교육	3,064,140	0.66	2,645,126	419,014	15.84
문화 및 관광	28,810,426	6.17	20,492,329	8,318,097	40.59
환경	16,417,547	3.51	15,326,589	1,090,958	7.12
사회복지	268,912,715	57.55	244,078,066	24,834,649	10.17
보건	16,268,359	3.48	14,772,422	1,495,937	10.13
농림해양수산	5,124,447	1.10	4,909,565	214,882	4.3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966,479	1.06	4,081,745	884,734	21.68
교통 및 물류	16,379,125	3.51	12,773,283	3,605,842	28.23
국토 및 지역개발	12,706,801	2.72	11,512,959	1,193,842	10.37
예비비	4,000,000	0.86	4,206,420	△206,420	△4.91
기타	63,242,654	13.53	61,977,987	1,264,667	2.04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419,974,461천원보다 47,314,541천원이 증액된 467,289,00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57.5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문화및관광, 일반공공행정 예산이며,
- 당초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 증가율은 공공질서및안전 78.25% 문화및관광 40.59%, 교통및물류 28.2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68%, 국토및지역개발 10.37% 순으로 증액 되었음.

라. 성립전 예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 예산은 28개사업 23,861,952천원임
- 「지방재정법」 제45조는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성립전 예산 현황>

6 (제242회-예산결산위 제2차부록)

부서명	사업명	제1회추경안 (단위: 천원)	재원	예산안 페이지
	계	22,389,017		
경제진흥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접수요원 인건비	11,390	기금	157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2,000	기금	157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	359,910	기금	157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	171,400	기금	158
	전통시장 방역활동 관리자 인부임	75,000	특별교부세	158
	방역약품 및 기타 소모품 등	19,000	특별교부세	158
	방역용 소독기 구입	6,000	특별교부세	158
복지지원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사업 인건비	300,000	시비보조금	275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사업 운영비	136,500	시비보조금	275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20,457,500	시비보조금	275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206,600	시비보조금	275
노인장애안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38,933	국고보조금114,415 시비보조금 24,518	299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162,000	시비보조금	321
환경위생과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20,423	기금20,191 시비보조금232	342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2,361	기금1,394 시비보조금697	342
안전총괄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물품 배송비	20,000	특별교부세	369
	방법용 CCTV 설치	300,000	특별교부세	371

부서명	사업명	제1회추경안 (단위: 천원)	재원	예산안 페이지
건설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317,000	시비보조금	383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20,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4
	구삼호교(인도교) 보수 및 보강공사	200,000	특별교부세	384
	도로변 풀베기 사업	68,815	시비보조금	384
	하천관리원 인건비	35,000	시비보조금	385
	하천정비 작업도구(장갑, 마대)구입	5,000	시비보조금	385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35,000	시비보조금	386
	해오름8길 일원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신설	700,000	특별교부세	386
보건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1월~3월)	57,120	기금	446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15,000	특별교부세	46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20,000	특별교부세	466

마. 주요 신규사업 편성 내역

-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울산형 청년수당, 아이돌봄 및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중부도서관 건립 등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공공질서 안전 중심으로 신규 편성 하였으며,
-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도로확장 공사,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신규사업 현황>

부서명	편성목	사 업 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획 예산실	201-01	전광판 홍보(울산공항)	40,000			40,000	128
일자리 기업과	301-01	울산형 청년수당	1,257,000		1,257,000		143
	101-04 201-01 206-01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14,000	57,000	28,500	28,500	144
	101-04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 인건비	30,000			30,000	145
	307-0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8,890		116,000	12,890	145
경제 진흥과	401-01 401-02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9,894	14,947	8,968	5,979	159
	401-01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000	28,000		12,000	159
	201-01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37,000			37,000	169
회계과	401-01	중양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 및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및 시각장애인 접자판 설치	203,500			203,500	169
	405-01	대표 누리집 노후 주전산기 교체, 암호화장비·노트북구입	133,000			133,000	200
행정 지원과	203-03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10,800		3,600	7,200	213
	405-01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구입	3,900			3,900	214
	307-02	학성동, 태화동, 병영2동 주민 자치회 자치사업 지원	15,000		15,000		214
	201-01	함월루 소망지 구입(성안동)	3,000			3,000	215
문화 관광과	401-01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122,000	100,000		22,000	229
	401-01	어련당 수선 및 수리	20,000			20,000	229
	307-05	수운 최계우 유허지 관리 운영비	80,000		40,000	40,000	230
	402-02	울산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0,000		14,000	6,000	230
	101-04 201-03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프로그램 인부임 및 운영비	48,350			48,350	231
	402-02	백양사 소방시설 보강	108,000		54,000	54,000	231

부서명	편성목	사 업 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문 화 관 광 과	402-02	해남사 보수정비	399,500	211,500	94,000	94,000	231
혁 신 교 육 과	201-03	로봇배움터 운영	16,500			16,500	243
	308-08	중구마을키움터 지원사업 (학교안)	30,000			30,000	243
	201-03 301-12 307-02 201-01 207-01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지구 추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244
	401-01	중부도서관 건립	6,400,000	3,333,000	1,667,000	1,400,000	245
	207-02	도서관 누리집 대출반납정보 구축	1,000			1,000	245
	307-02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업	9,100		9,100		246
	307-03	중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금	20,000			20,000	246
	201-03	전국 (장애인)체전 지원	31,800		21,800	10,000	246
	201-01 201-02	빙상장 설치 및 운영	73,000			73,000	247
	401-01	야외 빙상장 설치 및 운영	327,000			327,000	247
	201-01	학생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유지 대부료	18,000			18,000	247
	민 원 지 적 과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37,269			37,269
405-01		무인항공운영 통합 지원마당 구축	220,000			220,000	260
복 지 지 원 과	201-01 301-0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202,000			202,000	276
	307-05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40,111	28,078	12,033		277
노 인 장 애 인 과	207-01	광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19,000			19,000	291
	405-01	함월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13,788			13,788	291
	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21,000			21,000	292
	401-01 401-02	효자살버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7,028	18,514	9,257	9,257	293

10 (제242회-예산결산위 제2차부록)

부서명	편성목	사 업 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노 인 장애인과	402-0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8,992	9,496	9,496		297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08,624	286,037	61,294	61,293	299
여 성 가족과	307-11	아이돌봄 추가지원	106,872		53,436	53,436	313
	307-11	다문화 특화사업 종사자 수당	8,160			8,160	314
	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추가지원	10,000			10,000	314
	301-12	예식장업 방역지원	12,000	12,000			315
	301-01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2,000	1,400	600		317
	301-01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36,000	25,200	10,800		318
	402-03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400,000	400,000			320
	401-01	국공립 병영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170,000	150,000		20,000	320
	401-01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30,000	15,000	7,500	7,500	320
	307-10	사회복지시설 대체교사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324,533	1,994,720	930,869	398,944	324
	307-10	지역아동센터 공공요금 지원	9,600		4,800	4,800	324
	301-01	어린이집 통합차량 공기살균기 지원	23,870			23,870	326
환 경 위생과	207-01	공중화장실 사용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15,000			15,000	341
	201-01 301-12	인생맛집 지정업소 일반수용비 및 위생용품 지원	34,900			34,900	342
안 전 총괄과	201-02	내항배수장 등 5개소 CCTV 통신요금	5,280			5,280	370
	401-01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91,000	1,289,000	300,000	1,402,000	370
건설과	401-01	풍암마을 ~길촌마을 도로 확장 공사	850,000	760,000		90,000	384
	201-01	도로유지보수 현장근로자 보호 장비 구입	5,000			5,000	384
	405-01	도로유지관리 및 순찰용 차량구입	30,000			30,000	384
	401-01	자전거도로 등 시설장비	19,297		19,297		385
	401-01	성동천 일원 제방조성 사업 공사비	110,000			110,000	386
	401-01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315,000			315,000	386

부서명	편성목	사 업 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도시과	201-01	황암길(성안~가대)도로 확장공사 사무관리비(등기수수료)	5,680			5,680	393
	201-01	도시재생시설 유지 안전마루 관리	4,000			4,000	393
교통과	401-01	태화강국가정원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특별회계)	2,000,000	1,000,000		1,000,000	507
건축과	401-01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	670,000			670,000	405
	401-01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	280,000			280,000	405
공 원 녹지과	201-03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나의정원 만들기 운영	10,000		5,000	5,000	416
	206-01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10,000		10,000		416
	201-01	산불위험도 알림포지판	10,000		10,000		417
	405-01	산불대응장비(열화상카메라)	5,000		5,000		417
	405-01	산불진화차량 구입(노후차량 교체)	51,000	20,400	9,180	21,420	417
	401-01	보행교 안전검사(태화저수지 ~입화산)	6,000			6,000	418
	401-01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36,440			36,440	418
보건과	405-01	마음 안심버스 구입 및 개조	116,666	116,666			444
	101-04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건비	107,100	107,100			446
건 강 관리과	201-01	코로나19 방역사업 추진	44,000	44,000			464
	303-01	산별진료소 검사인력등 활동 한시 지원	6,662	3,331	1,666	1,665	465
	201-01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14,400	7,200	7,200		465
	101-04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13,850	56,925	28,462	28,463	465
	307-01	HPV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187,620	93,810	46,905	46,905	472
의 회 사무국	201-01	의회 인사업무 운영	6,720			6,720	493

바.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울산형 청년수당, 아이돌봄 및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중부도서관 건립 등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공공질서 안전 중심으로 신규 편성 하였으며,
-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도로확장 공사,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일상회복의 발판 마련을 위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코로나19 민생 긴급 대응을 위한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천원)

위 원 회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삭감액
합 계	467,289,002	419,974,461	47,314,541	103,900
의회운영위원회	2,590,372	2,575,073	15,299	0
일반회계	2,590,372	2,575,073	15,299	0
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	138,754,875	123,836,662	14,918,213	35,000
일반회계	138,754,875	123,836,662	14,918,213	35,000
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325,943,755	293,562,726	32,381,029	68,900
일반회계	316,759,284	285,758,642	31,000,642	68,900
특별회계	9,184,471	7,804,084	1,380,387	0

※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 : 별첨

5. 종합보고

가. 경과보고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음.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음.

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보고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 ▶ 일반회계 458,104,531천원
 - ▶ 특별회계 9,184,471천원 으로
 - ▶ 총 계 467,289,002천원 임.
- ▶ 당초예산(기정액) 419,974,461천원의 11.27%인 47,314,54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결과,
 - ▶ 세입분야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어 삭감된 예산액이 없으며,
 - ▶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103,900천원 삭감되어 추경편성요구액의 0.02%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음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35,000천원 삭감 하였으며,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안전도시국 68,900천원 삭감 하였음.

○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삭감)조서」 참고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 8.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22. 1. 13.] [울산광역시중구규칙 제48호, 2022. 1. 3., 일부개정]

- 제71조(제안설명과 회부·부의)** 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본예산안은 “구정연설”로 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의 세부적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의 위원회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 등에 따른다.
1.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호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한다.
 3.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이유 없이 제2호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 제출 원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심각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동의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동의여부를 예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종료 때까지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예산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실수 등의 사유로 편성·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개정 2022.1.3.>
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을 접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번안을 위하여 이를 접수·회부할 수 있다.
 4.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는 처음 회부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